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
· 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
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2월 10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중구 지역축제추진위원회 전문성 및 실무 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내실 있는 축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중구 지역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(9인 이내 → 15인 이내)
-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고자 함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는 2023년 3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문화정책과장, 주소 :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문화정책과, 전화 : 02-3396-4625, FAX : 02-3396-8621, e-mail : dwu20141163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 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

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첨부 1. 서울특별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(안)

서울특별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9인”을 “15인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”를 “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부구청장, 행정관리국장, 기획재정국장이 되며”를 “행정관리국장, 기획 재정국장이 되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 <u>9인</u> -----.</p> <p>② 위원회의 <u>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.</u></p> <p>③ -----, 당연직 위원은 <u>부구청장, 행정관리국장, 기획재정국장이 되며,</u> -----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 <u>15인</u> -----.</p> <p>② 위원회의 <u>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③ -----, 당연직 위원은 <u>행정관리국장, 기획재정국장이 되며,</u>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